

#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번호	199160	
등록번호	110111-1991606	
상 호	<del>주식회사 에빅스젠</del>	. . . 변경 . . . 등기
	주식회사 에빅스젠 (Avixgen Inc.)	2017.07.26 변경 2017.07.27 등기
본 점	<del>서울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del>	. . . 변경 . . . 등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반포동)	2011.10.31 도로 명주소 2013.07.01 등기
광고방법	<del>서울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신문 매일경제에 게재한다</del>	. . . 변경 . . . 등기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avixgen.com)에 한다 .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7.07.26 변경 2017.07.27 등기
1주의 금액	<del>금 5,000 원</del>	. . . 변경 . . . 등기
	금 500 원	2019.04.07 변경 2019.04.12 등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del>144,000 주</del>	. . . 변경 . . . 등기
	<del>500,000 주</del>	2015.09.15 변경 2015.10.27 등기
	<del>10,000,000 주</del>	2017.07.26 변경 2017.07.27 등기
	100,000,000 주	2019.02.28 변경 2019.03.12 등기
<b>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b>	<b>자본금의 액</b>	<b>변 경 연 월 일 등 기 연 월 일</b>
발행주식의 총수 <del>보통주식</del>	<del>36,000 주</del> 36,000 주	. . . 변경 . . .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보통주식</del>	<del>36,900 주</del> 36,900 주	2001.08.07 변경 2001.08.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del>보통주식</del>	<del>38,615 주</del> 38,615 주	2001.08.08 변경 2001.08.0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9,805 주	2001.09.05 변경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14일 11시21분04초

등기번호	19916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del>보통주식 49,805 주</del>	<del>금 249,025,000 원</del>	2001.09.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06.12.28 변경
<del>보통주식 64,805 주</del>	<del>금 324,025,000 원</del>	2006.12.28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15.07.10 변경
<del>보통주식 69,605 주</del>	<del>금 348,025,000 원</del>	2015.07.22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15.09.13 변경
<del>보통주식 52,105 주</del>	<del>금 260,525,000 원</del>	2015.09.14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2015.11.25 변경
<del>보통주식 53,366 주</del>		2015.11.27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3,125 주</del>	<del>금 282,455,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5.11.27 변경
<del>보통주식 53,366 주</del>		2015.11.27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18,750 주</del>	<del>금 360,58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7.07.26 변경
<del>보통주식 266,830 주</del>		2017.07.27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93,750 주</del>	<del>금 1,802,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2.28 변경
<del>보통주식 274,830 주</del>		2018.02.28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93,750 주</del>	<del>금 1,842,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4.10 변경
<del>보통주식 284,830 주</del>		2018.04.11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93,750 주</del>	<del>금 1,892,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5.15 변경
<del>보통주식 294,830 주</del>		2018.05.16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93,750 주</del>	<del>금 1,942,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5.19 변경
<del>보통주식 299,830 주</del>		2018.05.24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93,750 주</del>	<del>금 1,967,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5.22 변경
<del>보통주식 303,830 주</del>		2018.05.24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93,750 주</del>	<del>금 1,987,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6.09 변경
<del>보통주식 308,730 주</del>		2018.06.15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103,250 주</del>	<del>금 2,059,90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6.12 변경
<del>보통주식 308,730 주</del>		2018.06.15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121,431 주</del>	<del>금 2,150,805,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2018.06.23 변경
<del>보통주식 308,730 주</del>		2018.06.25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14일 11시21분04초

등기번호	199160
------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del>전환상환우선주식 148,702 주</del>	<del>금 2,287,16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4,574,320 주		2019.04.07 변경
<del>보통주식 3,087,300 주</del>		2019.04.12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1,487,020 주</del>	<del>금 2,287,16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4,574,320 주		2019.06.30 변경
<del>보통주식 4,574,320 주</del>	<del>금 2,287,160,000 원</del>	2019.07.11 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4,774,320 주		2019.08.15 변경
<del>보통주식 4,574,320 주</del>		2019.08.21 등기
<del>전환상환우선주식 200,000 주</del>	<del>금 2,387,160,000 원</del>	
발행주식의 총수 4,877,179 주		2019.10.05 변경
보통주식 4,574,320 주		2019.10.15 등기
전환상환우선주식 302,859 주	금 2,438,589,500 원	

목	적			
<del>1. 후천성면역결핍증 치료제 개발 및 제공업</del>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2. 유전자 치료생리활성물질 개발 및 제공업</del>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3. 항바이러스제 개발 및 제공업</del>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4. 생물학적 제제 개발 및 제공업</del>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5. 진단제 개발 및 제공업</del>	<2017.07.26	삭제	2017.07.27	등기>
<del>6.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del>	<2003.06.08	삭제	2003.06.13	등기>
<del>6. 홈페이지 제작, 서버관매 및 서버관리업</del>	<2003.06.08	추가	2003.06.13	등기>
	<2017.07.26	삭제	2017.07.27	등기>
<del>7. 의약품, 의료용구 도소매업</del>	<2003.06.08	추가	2003.06.13	등기>
	<2017.07.26	삭제	2017.07.27	등기>
<del>8. 의약품, 의료용구 수출입업</del>	<2003.06.08	추가	2003.06.13	등기>
	<2017.07.26	삭제	2017.07.27	등기>
<del>9. 통신판매업</del>	<2003.06.08	추가	2003.06.13	등기>
	<2017.07.26	삭제	2017.07.27	등기>
<del>10.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del>	<2003.06.08	변경	2003.06.13	등기>
	<2017.07.26	삭제	2017.07.27	등기>
<del>5.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6. 생명공학 관련 신기술 연구, 개발 및 상품화, 판매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7. 위 연구개발에 따른 국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획득 및 이전</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8. 신약특허 기술이전 및 이에 따른 로열티 획득 사업</del>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14일 11시21분04초

등기번호	199160
------	--------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9. 신약개발사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0.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발굴 및 분석 서비스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1. 연구개발 용역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2. 진단제 개발 및 제공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3. 홈페이지 제작, 서버판매 및 서버관리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4. 의약품, 의료용구 도. 소매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5. 의약품, 의료용구 수출입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6. 각호와 관련된 통신판매업</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del>17. 위 각호 관련 부대사업 일체</del>	<2017.07.26	추가	2017.07.27	등기>
	<2020.03.27	삭제	2020.04.08	등기>
1. 신약 연구, 개발 상품화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생명공학관련 신기술 연구, 개발 상품화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개발된 제품 및 신기술의 사용권 대여 및 양도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신약개발을 위한 약효검색, 발굴 및 분석서비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연구개발 용역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진단제 개발 및 제공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 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기타 의료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과학기자재, 시약의 제조 및 도. 소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환경 및 건강관련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화장품 개발, 제조 및 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각호와 관련된 컨설팅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의약품 및 의료용구 도. 소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의약품 및 의료용구 수출입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각호와 관련된 통신판매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수입품의 판매 및 위탁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14일 11시21분04초

등기번호	199160
------	--------

1. 부동산 매매, 임대 및 관리업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1. 위 각호에 연관되는 부대사업 일체	<2020.03.27 추가	2020.04.08	등기>

임원에 관한 사항			
<del>이시 유지창 590213 *****</del>			
2000년 06월 08일	취임	2000년 06월 08일	등기
2003년 06월 08일	중임	2003년 06월 13일	등기
2006년 06월 08일	퇴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6년 12월 27일	취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9년 12월 27일	중임	2010년 01월 08일	등기
<del>사내이사 유지창 590213 *****</del>			
2012년 12월 27일	중임	2013년 01월 10일	등기
2015년 12월 28일	중임	2015년 12월 29일	등기
2018년 12월 28일	퇴임	2019년 03월 12일	등기
<del>이시 함대현 660725 *****</del>			
2000년 06월 08일	취임	2000년 06월 08일	등기
2003년 06월 08일	중임	2003년 06월 13일	등기
2006년 06월 08일	퇴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6년 12월 27일	취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9년 12월 27일	중임	2010년 01월 08일	등기
<del>사내이사 함대현 660725 *****</del>			
2012년 12월 27일	중임	2013년 01월 10일	등기
2015년 12월 28일	중임	2015년 12월 29일	등기
2017년 07월 26일	사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del>이시 경선주 620428 *****</del>			
2000년 06월 08일	취임	2000년 06월 08일	등기
2003년 06월 08일	중임	2003년 06월 13일	등기
2006년 06월 08일	퇴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del>대표이사 유지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15-34</del>			
2000년 06월 08일	취임	2000년 06월 08일	등기
<del>대표이사 유지창 590213 *****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15-34</del>			
2003년 06월 08일	중임	2003년 06월 13일	등기
2006년 06월 08일	퇴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del>대표이사 유지창 5902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66 서초녹원아파트 1-101</del>			
2004년 01월 26일	주소변경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6년 12월 27일	취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9년 12월 27일	중임	2010년 01월 08일	등기
<del>대표이사 유지창 590213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83, 101호(서초동, 서초녹원아파트)</del>			
2012년 12월 27일	중임	2013년 01월 10일	등기
2015년 12월 28일	중임	2015년 12월 29일	등기
2018년 12월 28일	퇴임	2019년 03월 12일	등기
<del>감사 김상현 580506 *****</del>			
2000년 06월 08일	취임	2000년 06월 08일	등기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14일 11시21분04초

등기번호	199160						
2003년 03월 30일	중임	2003년 04월 16일	등기	2006년 03월 31일	퇴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del>감사 오우택 550629-*****</del>							
2006년 12월 27일	취임	2006년 12월 28일	등기	2009년 03월 25일	중임	2009년 04월 02일	등기
2012년 03월 31일	중임	2012년 04월 10일	등기	2015년 03월 31일	중임	2015년 04월 08일	등기
2018년 03월 30일	퇴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				
<del>이사 이준일 610810-*****</del>							
2007년 03월 31일	취임	2007년 04월 13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퇴임	2010년 08월 19일	등기
<del>이사 김상현 580506-*****</del>							
2007년 03월 31일	취임	2007년 04월 13일	등기	2010년 03월 31일	퇴임	2010년 08월 19일	등기
<del>사내이사 김상현 580506-*****</del>							
2010년 08월 10일	취임	2010년 08월 19일	등기	2013년 08월 10일	중임	2013년 08월 20일	등기
2016년 08월 10일	퇴임	2016년 08월 10일	등기				
기타비상무이사 함대현 660725-*****							
2017년 07월 26일	취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del>사내이사 김재식 660121-*****</del>							
2017년 07월 26일	취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2018년 09월 14일	사임	2018년 09월 14일	등기
<del>대표이사 김재식 6601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29, 603동 602호(아매동, 아매촌)</del>							
2017년 07월 26일	취임	2017년 07월 27일	등기	2018년 09월 14일	사임	2018년 09월 14일	등기
감사 이제현 601218-*****							
2018년 03월 30일	취임	2018년 04월 02일	등기				
사내이사 김재규 571103-*****							
2018년 09월 14일	취임	2018년 09월 14일	등기				
<del>사내이사 이승재 730916-*****</del>							
2018년 09월 14일	취임	2018년 09월 14일	등기	2019년 07월 31일	사임	2019년 08월 09일	등기
사내이사 유지창 590213-*****							
2019년 02월 28일	취임	2019년 03월 12일	등기				
<del>대표이사 유지창 590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17길 83, 101호(서초동, 서초녹원아파트)</del>							
2019년 02월 28일	취임	2019년 03월 12일	등기				
대표이사 유지창 590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나루터로4길 49, 332동 304호(잠원동, 신반포17차아파트)							
2019년 12월 24일	주소변경	2020년 04월 08일	등기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열람일시 : 2020년07월14일 11시21분04초

- 6/13 -

**종류주식의 내용**

전환상환우선주식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의결권·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우선·전환 및 상환권이 있는 주식(이하, ‘종류주식’ 이라고도 함.)으로 하며, 보통주식의 주주와 같이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2이하로 한다.

②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0%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비율에 따른 금액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종류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받는다.

단, 종류주식에 대한 참가조건, 배당방식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종류주식의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⑤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종류주식은, 그 종류주식의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주주가 되는 것으로 본다.

⑥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된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금원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분배를 한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 분배금액이 본 건 종류주식에 대한 분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건 종류주식의 주주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의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함께 참가하여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단, 청산시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배조건과 방식에 대해서는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⑦ 회사가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주식과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같은 종류의 종류주식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갖는다.

⑧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 및 내용의 주식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 받을 권리가 있다.

⑨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써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2. 종류주식 1주에 대한 보통주식 전환비율은 우선주식 1주당 보통주식 1주로 하되, 이사회가 발행시에 전환비율, 전환가액의 조정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3. 기타 전환청구의 절차, 전환조건 등 전환권 행사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우선주식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⑩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그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상환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류주식의 주주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

등기번호	199160
------	--------

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종류주식의 주당 상환금액은 해당 종류주식의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15%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기지급된 배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하 “상환기간”)은 종류 주식의 발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3.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상환청구가 있으면,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4. 상환기간내에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종류주식에 대하여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되는 날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5. 배당가능이익이 있음에도 상환청구에 대해 회사가 상환금액의 상환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환을 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연 복리 20%이내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배당금을 지급한다.

⑪ 종류주식의 우선권, 전환권, 상환권 및 기타 권리의 구체적인 조건, 내용, 범위, 행사정차, 효력, 기타 필요하거나 관련된 사항은 본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발행시에 이사회가 결의로 정한다.

2019년 08월 14일 설정      2019년 08월 21일 등기

### 기 타 사 항

#### 1. 발행주식의 내용

~~우선주식 18,750 주의 내용~~

~~1. 기명식 전환상환 우선주식으로 발행한다.~~

~~2. 발행주식수는 18,750 주로 한다.~~

~~3.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4.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2%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받는다.~~

~~5.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6.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등기번호	199160
------	--------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 상장’ 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4호 내지 9호의 규정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7.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특별상환권(기한 전 상환권)에 관한 사항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와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2015년 11월 23일 변경      2015년 11월 27일 등기~~

~~우선주식의 내용~~

~~1. 기명식 전환상환 우선주식으로 발행한다.~~

~~2. 의결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식 일주당 보통주와 동일하게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일주당 일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3.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참가적, 누적적 우선주로 인수인은 본건 우선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1주당 액면가액 기준 연 2%의 배당을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 받고,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배당률로 함께 참가하여 배당~~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99160
------	--------

~~받는다.~~

~~4. 청산 잔여재산 분배에 있어서 우선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청산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당 발행가액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8%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보통주식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청산 이전까지 미지급 배당금이 있는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5. 전환권에 관한 사항~~

~~전환기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그 납입기일 다음날로부터 10년 경과일 전일까지(또는 존속기간 말일 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우선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본건 우선주식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건 우선주식은 그 만료일에 보통주로 자동전환된다.~~

~~전환비율은 다음과 같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 항의 각 호는 중복적으로 적용한다.~~

~~본건 우선주식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한다.~~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당시의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경우는 전환비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조정 후 우선주 1주당 전환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우선주 1주당 전환되는 보통주의 수 × 조정 전 본건 우선주식의 전환가격 / 회사의 IPO 공모단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회사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 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 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4호 내지 9호의 규정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 조정된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당시 시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사가격으로 조정한다. 그 때로부터 3년간 매 6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우회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행사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직전 전환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6. 상환권에 관한 사항~~

~~상환청구권: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회사는 상환청구권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본건 우선주식의 납입기일 다음날(발행일, 본건 우선주식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회사에 대하여 본 조에 따라 본건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상환가능한 최대한의 자금으로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후 본건 우선주식의 상환에 합법적으로 사용가능한 추가 자금이 발생하는 때에는 회사는 동 자금을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가 상환청구하였으나 미상환된 주식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청구가 있었음에도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상환청구권의 행사는 상환청구일까지 미지급 배당금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특별상환권(기한 전 상환권)에 관한 사항~~

~~기한 전 상환: 본건 우선주식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2조 2항에서 정한 상환조건과 별개로 회사에 대해 본건 우선주식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 3항 내지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건 우선주식은 보통주의 동등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무상증치의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우~~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99160
------	--------

<del>선주로,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키로 한 종류의 주식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del>	
2018년 06월 22일 변경	2018년 06월 25일 등기
2019년 06월 30일 전부전환	2019년 07월 11일 등기
1. <del>이익에 의한 주식 소각</del>	
1. <del>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del>	
2017년 07월 26일 변경	2017년 07월 27일 등기
2019년 02월 28일 말소	2019년 03월 12일 등기
1. 전환주식의 전환	
2019년 6월 30일 전환상환 우선주식 1,487,020주를 보통주식 1,487,020주로 전부 전환	
2019년 06월 30일 변경	2019년 07월 11일 등기

주식매수선택권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1. <del>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del>	
<del>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상법 제340조의</del>	
<del>2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del>	
< 년 월 일 변경 2000년 06월 08일 등기 >	
1. <del>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del>	
<del>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del>	
<del>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del>	
<del>성과 또는 주가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del>	
< 2017년 07월 26일 변경 2017년 07월 27일 등기 >	
1.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범	
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	
로 부여할 수 있다.	
< 2019년 02월 28일 변경 2019년 03월 12일 등기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del>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del>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년 월 일 변경 2000년 06월 08일 등기 >	
7.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	
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보통주식(또는 종류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5.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	
과할 수 없다.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

등기번호	199160
------	--------

<p>&lt; 2017 년 07 월 26 일 변경 2017 년 07 월 27 일 등기 &gt;</p> <p>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p> <p><del>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요건</del>  <del>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단,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del></p> <p>&lt; 년 월 일 변경 2000 년 06 월 08 일 등기 &gt;</p> <p><del>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del></p> <p><del>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del></p> <p>&lt; 2017 년 07 월 26 일 변경 2017 년 07 월 27 일 등기 &gt;</p> <p>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p> <p>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lt; 2019 년 02 월 28 일 변경 2019 년 03 월 12 일 등기 &gt;</p> <p>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p> <p><del>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del>  <del>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 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del></p> <p>&lt; 년 월 일 변경 2000 년 06 월 08 일 등기 &gt;</p> <p>8.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lt; 2017 년 07 월 26 일 변경 2017 년 07 월 27 일 등기 &gt;</p> <p>5.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p> <p>(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p> <p>(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경우</p> <p>(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p>
---

등기번호	199160
------	--------

< 2017년 07월 26일 변경 2017년 07월 27일 등기 >	
1.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2017년 07월 26일 변경 2017년 07월 27일 등기 >	

회사성립연월일	2000년 06월 08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00년 06월 08일 등기
-------------------------	------------------

수수료 700원 영수함

--- 이하 여백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 본 등기기록은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실선으로 그려진 부분은 말소(변경, 경정)된 등기사항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는 컬러로 출력 가능함.